

##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사무종사 전문연구원 채용 공고

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법률사무에 종사할 전문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2년 10월 5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

### 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인원	담당업무	근무기관	근무기간
전문연구원	1명	법령검토	개인정보보호위원회 (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)	채용일로부터 1년 ('22.11. ~ '23.11. 예정) *근로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자동 종료

\*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「변호사법」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므로, 변호사자격 취득 후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간으로 인정됨

### 2. 응시 자격

응시요건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) \* 최종시험 예정일('22.10.28.) 기준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
- 법학 전공자(법학석사 또는 법학전문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)

우대요건 \* 원서접수 마감일('22.10.14.) 기준

#### 채용 우대 사항

1. 「변호사법」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
2. 법학박사 또는 법학전문박사 학위 소지자

○ 우대요건 기본 사항

-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, 우대요건 해당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(2022.10.14.)을 기준으로 판단함
- 법학박사 또는 법학전문박사를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대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
※ 예시1)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제출한 자

    : 법학석사 학위를 응시요건, 법학박사 학위를 우대요건으로 인정

    예시2) 법학박사 학위만 제출한 자 : 법학박사 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인정

□ 증빙서류 제출

- 변호사 자격증, 학위 소지자의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만 인정

\* 증빙자료

- 1) 학위 - 졸업증명서 사본(학교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, 기피·제척사유 판단의 근거로만 사용됨)
- 2) 자격증 -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,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, 변호사등록증 사본 중 택 1 하여 제출

### 3. 근무조건

가. 신 분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근로자

나. 계약기간 : 채용일로부터 1년, '22. 11월 ~ '23. 11월(예정)

다.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 (09:00 ~ 18:00)

라. 보 수 : 월268만원 내외 ※ 정액급식비 및 명절수당 균등 지급분 포함

    ※ 소득세, 지방소득세, 4대 보험료 등은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공제함

마. 후생복지 : 복리후생비·교육비·건강검진비 지원, 청사헬스장 무료이용 등

## 4. 시험방법

### 가. 1차 심사 : 서류전형

- 면접시험 대상자는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공고 예정
- ※ 서류전형기준 : 자기소개서, 우대요건 등

### 나. 2차 심사 : 면접시험(제시된 주제에 대한 발표가 포함될 수 있음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에 대해 상·중·하로 평가
- ※ 평정요소 : ① 국가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·논리성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
- ※ 최종합격자 결정 : 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하고, “상”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“중”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함. 단,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

## 5. 채용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2.10.5.(수) ~ 10.14.(금)	
원서접수	'22.10.5.(수) ~ 10.14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전자우편 접수 : hdy123@korea.kr</li> <li>※ 메일제목 : 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연구원 응시원서 (성명 000)” 로 제출</li> <li>※ 우편·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</li> </ul>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2.10월 중 예정	● 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공고
면접심사	'22.10.28.(금) 예정	
최종합격자 발표	'22.11월 중 예정	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·연장 등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

## 6. 제출서류

### 《필수 제출》

- 1) 응시원서 1부 【별지 제1호 서식】
- 2) 자기소개서 1부 【별지 제2호 서식】
- 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【별지 제3호 서식】
- 4)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【별지 제4호 서식】
- 5)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【별지 제5호 서식】
- 6) 법학석사 또는 법학전문석사 이상 졸업증명서(학위증) 사본 1부
- 7) (남성)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

### 《선택 사항》

-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,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, 변호사등록증 사본 중 택 1
- 법학박사 또는 법학전문박사 졸업증명서(학위증) 사본 1부

#### <<서류제출 주의사항>>

- 가. 제출 서류 중 별지 1~5번의 서류의 경우, **반드시 서명**하여 제출  
- **필수제출서류 및 선택제출서류 등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반드시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하나의 첨부파일만 제출**
- 나. 응시원서에 작성한 이력사항 중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

## 7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 처리됩니다.

-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나라 일터 및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근로계약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(☎ 02-2100-301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응시원서 작성요령

1. 응시원서는 반드시 본 공고문의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
2.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
3. 『응시원서』는 아래의 《작성요령》에 따라 작성함

### 《작성요령》

#### 가. 공통사항

1. 응시번호 : 작성하지 않음 ※ 서류전형 실시 전까지 응시번호 발송 예정
2. 성명, 전자우편,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

#### 나. 필수요건(학위)

1. 학위 : 학위기재
2. 학위취득일 : 학위취득일 기재
3. 전공(학과) : 학위 취득한 전공(학과) 기재

#### 다. 우대요건(자격증)

1. 자격증명 : 자격증명 기재
2. 자격증 취득일 : 자격증 취득일 기재
3. 발급기관 : 자격증 발급기관 기재

#### 라. 우대요건(학위)

1. 학위 : 학위기재
2. 학위취득일 : 학위취득일 기재
3. 전공(학과) : 학위 취득한 전공(학과) 기재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# 자 기 소 개 서

▣ 응시분야 : 전문연구원

▣ 성 명 :

1. 자유롭게 기술하되, 지원동기, 생활신조와 가치관, 성격의 장·단점,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사례,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, 대인관계, 특기사항,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.

※ 지원동기는 반드시 포함

2. 작성 시 **학교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음**

3. 반드시 A4 2페이지 이내 작성(**2페이지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**)

2022. . .

작성자 ○ ○ ○ (날인 또는 서명)







【별지 제5호 서식】

##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명	응시분야
	전문연구원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⑧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2. . . .

성명 : (서명)

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